

긴급복지지원사업

1 기본 현황

□ 사업개요

회 계	일반회계		
사업기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연례반복		
사업내용	○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선지원, 후조사로 시기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함		
사업비 (당해년도)	24,678,000천원	(국비)16,452,000천원	(시비)8,226,000천원
	기타 (예산 외) (구비)		(기타)

□ 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복지정책실	지역돌봄복지과	박병권 2133-7370	서경란 2133-7379	김소라 2133-7383

※실국 및 부서명은 예산서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재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2 예산 설명

□ 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, %)

구 분	2018예산액 (A)	2019예산액 (B)	증감 (B-A)	(B-A)*100/A
계	(x14,324,000) 20,103,000	(x16,452,000) 24,678,000	(x2,128,000) 4,575,000	(x14) 22
자치단체경상보조금	(x14,324,000) 20,103,000	(x16,452,000) 24,678,000	(x2,128,000) 4,575,000	(x14) 22

□ 산출근거

과목구분	2019년 예산내역		
자치단체경상보조금	○ 긴급복지지원사업	=	24,678,000천원

과목구분	2019년 예산내역
	24,678,000,000원

3 사업 설명

사업목적

- 기존의 신청주의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복지사각지대 소외 단절계층에 대한 발굴 및 신속한 지원을 통하여 수급자 전락 예방 및 자립(자활) 지원

사업근거

- 긴급복지지원법

사업내용

- 사업기간 : 2019. 1 ~ 12월
- 지원대상 : 주소득자 사망, 중병, 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
- 지원기준 : 기준중위소득 75% 이하, 재산 135백만원이하(금융재산 5백만원)
- 지원내용 : 위기상황별 맞춤형 지원(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, 교육비 등)
- 재원분담율 : 국비 50%, 시비 25%, 구비 25%
- 총사업비 : 24,678,000천원

추진경위

- '05.12.23. : 긴급복지지원법 제정
- '15.12.~ :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

2019년도 추진일정

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24,678,000	
기본계획 수립	2019.01~2019.01		
보조금 신청 및 집행	2019.01~2019.12		자치구 보조금 월별 신청 및 교부
보조금 집행 정산	2020.01~2020.02	24,678,000	보조금 정산

4 사업 효과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2016년도	○ 27,854가구, 21,146백만원 지원
2017년도	○ 38,230가구, 26,865백만원 지원
2018년도	○ 27,551가구, 18,491백만원 지원('18년 9월말 기준)

□ 향후 기대효과

○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신속한 지원을 하여 위기해소, 빈곤예방

5 최근 3년 결산 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최종예산	전년이월	예산변경	예산현액	집행액	차년이월	집행잔액
2015	(x14,369,000) 24,183,752	(x- 0	(x- 600,000	(x14,369,000) 24,783,752	(x14,369,000) 24,776,142	(x- 0	(x- 7,610
2016	(x11,705,000) 17,557,500	(x- 0	(x- 0	(x11,705,000) 17,557,500	(x11,705,000) 17,557,500	(x- 0	(x- 0
2017	(x13,700,000) 20,550,000	(x- 0	(x- 0	(x13,700,000) 20,550,000	(x13,700,000) 20,550,000	(x- 0	(x- 0